

#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 357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1998. 4. 2.

제 출 자 : 제18회 파주시의회  
산업건설위원회

## ☐ 수정이유

- 정부조직법이 '98년 2월 28일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고자 함.

## ☐ 수정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내용중 내무부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함. 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3호)

파주시조례 제 호

##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내부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.

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

행

수

정

안

제5조 (점용료등의 감면)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.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시설, 가스공급시설,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.
3. 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- 1 ~ 2 (생략)
3.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과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5조 (점용료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1.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행정자치부령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
2.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행정자치부령 - - - - -  
- - - - -
3.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행정자치부령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

② (현행과 같음)

- 1 ~ 2 (현행과 같음)
3. - - - - -  
- - - - -  
- - - - - 행정자치부령 - - - - -  
- - - - -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